규제영향분석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목 차>

1.인증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2.인증심사·확인조사 등 각종 조사의 절차·방법
3.이행계획서 항목 추가
4.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기준
5.인증심사원 취소기준
6.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작성자	이름	김영국
	담당부서(과)	산업표준혁신과		직급	공업연구관
	국장	박종섭		연락처	0438705382
	과장	배진한		이메일	ykengland@korea.kr

2026. 10. 20.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박종섭 (서명)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인증기관의 세부 지정기준</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제13조</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10.29~2026.12.28</td></tr>
<tr><td rowspan="3">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제도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ㅇ(제4조)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K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td><td>신규 지정 신청기관
(1년 1개 미만)</td></tr><tr><td>이해관계자</td><td>KS 인증기업</td><td>8,728개 공장 (2025년 기준)</td></tr></table></td></tr>
<tr><td rowspan="3">규제의
적정성</td><td>9.규제목표</td><td colspan="3">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지정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인증기관 지정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td></tr>
<tr><td rowspan="2">10.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r>
<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음</td></tr>
<tr><td>규제의
적정성</td><td>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td><td colspan="3"></td></tr>
<tr><td>기타</td><td>12.규제일몰제</td><td colspan="3"><table><tr><th>대분류</th><th>소분류</th><th></th></tr><tr><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tr><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tr><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미해당</td></tr><tr><td>경제규제
여부기준</td><td>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7"></td><td rowspan="7"></td><td></td><td colspan="2">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3">일몰설정
세부기준</td><td colspan="2">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일몰설정여부</td><td>일몰조문</td><td>연장여부</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일몰유형</td><td>일몰설정기간</td><td>일몰주기</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4"></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제도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세부 심사기준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심사기준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증기관 지정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내용)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명시함

○ (선택근거) 기존에 운영 중인 세부 심사기준의 고시 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정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에 새로운 지정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안으로 적절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KS인증기업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청취 예정		

3. 규제목표

○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인증기관 지정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개정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 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인증기관 지정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

○ 기존 지정요건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지정요건이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서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개정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인증기관에 새로운 지정요건이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본 개정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현행 인증기관 지정심사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행정조직이나 인력 확충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증기관 지정제도의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세부 심사기준의 고시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편성이나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집행이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ㅇ 본 개정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 기준에 대한 고시 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명확히 하여 인증기관 지정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ㅇ 기존 지정요건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며, 현행 행정체계 내에서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 확충 없이 집행이 가능하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인증심사 · 확인조사 등 각종 조사의 절차 · 방법</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제17조</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10.29~2026.12.28</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시판품조사 · 현장조사 외에 인증받은 자의 다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및 KS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결과 보고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적정한 인증표시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인증심사 · 확인조사 등 각종 조사의 절차 · 방법</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KS인증기업 및 인증도용 기업</td><td>8,728개 공장 (2025년 기준)</td></tr><tr><td>이해관계자</td><td>KS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td><td>12개 기관, 약 2천여명</td></tr></table></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인증심사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판품조사 · 현장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을 정비하고, 추가 조사 및 확인조사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KS 인증표시 등의 부정사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불법 ·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td></tr>
<tr><td rowspan="5">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5">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피규제자</td><td></td><td></td><td></td></tr>
<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
<tr><td>정성분석</td><td></td><td></td><td></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r><td>11.영향평가
여부</td><td colspan="4"><table><tr><th>기술영향평가</th><th>경쟁영향평가</th><th>중기영향평가</th></tr><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table></td></tr>
<tr><td>기타</td><td>12.규제일몰제</td><td colspan="3">대분류 | 소분류</td></tr>
</table>

<table>
<tr><td rowspan="8"></td><td rowspan="8"></td><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td>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td>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3">
<table>
<tr><th>일몰설정여부</th><th>일몰조문</th><th>연장여부</th></tr>
<tr><td></td><td></td><td></td></tr>
<tr><th>일몰유형</th><th>일몰설정기간</th><th>일몰주기</th></tr>
<tr><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td><td>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3">해당없음</td></tr>
<tr><td></td><td>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td><td colspan="3">
<table>
<tr><th>적용여부</th><th>비용</th><th>편익</th><th>연간균등순비용</th></tr>
<tr><td>적용</td><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td><td>15.규제정비 계획</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제17조</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
1. 공장심사	1. 공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이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1개월 이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 일부를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인증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인증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그 종류·등급·호칭·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 가목 및 바목	1) 인증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그 종류·등급·호칭·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 가목 및 바목
2)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 가목 및 바목	2)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 가목 및 바목
3) 삭제 <2017. 1. 26.>	3) 삭제 <2017. 1. 26.>
<신 설>	4) 인증신청인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또는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경우 별표 8 Ⅰ제1호가목. 다만 그 인증이 유효하고 인증범위에 인증신청 품목을 제조하는 공장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경우	5)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사. 인증신청 후부터 인증서 발급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사. 인증신청 후부터 인증서 발급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아. 인증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 인증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심사를 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인증기관은 다목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 가능해지면 즉시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해당 공장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 인증기관은 다목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 가능해지면 즉시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해당 공장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 설>	차. 인증기관은 주요 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그 외주가공 업체의 사업장에서 해당 공정의 관리 상태를 확인(이하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주가공 업체가 해당 공정을 포함하는 품목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실시한 현장확인의 결과가 적합이고 그 현장확인을 실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장확인의 방법, 현장확인에 필요한 심사일수 및 그 결과의 기록·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2. 품질관리심사 가. 인증기관은 제1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이(E)형·지(G)형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하여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품질관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인증심사반의 편성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다. 품질관리심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의 사업장: 신청인이 인증신청 품목의 설계·개발, 품질기준의 수립, 위탁생산의 관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 중 이(E)형 또는 지(G)형에 적용되는 사항 2) 인증신청 품목을 제조하는 공장: 해당 공장이 신청인의 사내표준에 제품을 제조·검사할 수 있는 기술적 생산조건을 갖추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 중 자재·공정·제품 및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등 제조·검사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라. 심사의 대상이 되는 운영기록 등에 관하여는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마.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사방법 및 그에 따라 인증한 제품에 대한 현장확인에 관하여는 제1호 다목 및 자목을 준용한다. 바. 품질관리심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적합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 심사사항의 일부 생략, 한국산업표준 및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 및 1년주기 심사 시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호 바목·사목 및 아목을 준용한다.
	아. 신청인은 품질관리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 인증기관은 주요 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그 외주가공 업체의 사업장에서 해당 공정의 관리 상태를 확인(이하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주가공 업체가 해당 공정을 포함하는 품목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실시한 현장확인의 결과가 적합이고 그 현장확인을 실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장확인의 방법, 현장확인에 필요한 심사일수 및 그 결과의 기록·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품심사
2. 제품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試料)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封印)한 후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試料)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封印)한 후에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나. 인증심사원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제품제조공장을 현장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선택한 시료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봉인하도록 한 후에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인증심사원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제품제조공장을 현장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선택한 시료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봉인하도록 한 후에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다.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

현 행	개 정 안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항목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라.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바. 공인시험·검사기관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바. 공인시험·검사기관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3. 사업장심사	4. 사업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서비스 분야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서비스 분야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나. 신규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이 별표 8 Ⅱ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신규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이 별표 8 Ⅱ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사업장심사에 합격하고 서비스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서비스심사 불합격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인증 재신청 시 사업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장심사에 합격하고 서비스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서비스심사 불합격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인증 재신청 시 사업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2) 인증신청인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또는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경우 별표 8 Ⅱ제1호 가목. 다만 그 인증이 유효하고 인증범위에 인증신청 분야의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경우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끝냈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사업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끝냈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사업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사업장심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사업장심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5. 서비스심사
4. 서비스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실제 서비스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서비스 이행 실태를 심사해야 한다.
가. 인증심사원은 실제 서비스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서비스 이행 실태를 심사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2명이 합동으로 1일간 심사를 하고 서비스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2명이 합동으로 1일간 심사를 하고 서비스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절차
5.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절차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1호나목 및 마목,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5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이(E)형 또는 지(G)형 인증받은자 대상으로 현장조사 시 위탁 제조공장(해당되는 경우)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1호나목 및 마목,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후단신설>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신 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제4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가목·나목을 준용한다.
<신 설>	8. 확인조사의 방법·절차
	가. 확인조사는 법 제15조제3항·제4항,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의 공장·사업장·사무소 또는 해당 제품·서비스의 판매·유통 장소에서 실시한다.
	나. 확인조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품·용기·포장·납품서·보증서 또는 광고물의 표시 내용 확인
	2) 제조·판매·유통에 관한 서류·기록의 확인
	3) 제조 공장·사업장·사무소 등의 관련 설비 및 관련 서류·기록의 확인
	다. 확인조사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라.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은 확인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일시·조사장소, 조사대상, 확인된 사실과 그 근거자료 등이 포함된 확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인증업무의 온라인 처리	9. 인증업무의 온라인 처리
인증기관은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 기업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 기업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외에 인증받은 자의 다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및 KS 인증표시 등의 부정사용 혐의자에 대한 확인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ㅇ 현행 시행규칙은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조사 및 확인조사에 대한 세부 절차가 없어 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인증심사 및 조사·확인조사의 절차·방법 구체화
	내용	인증심사유형별 심사절차를 정비하고,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산업표준화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대상·방법 및 결과보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인증심사 및 조사절차 유지
	내용	현행 인증심사 및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절차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조사·확인조사의 세부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조사·확인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조사 업무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조사·확인조사 절차의 확대·구체화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료 확인 및 현장 대응 등에 추

	하고, KS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 강화	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제대안2	기존 심사·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조사·확인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업무의 일관성 확보와 위반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KS인증기관 등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청취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ㅇ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인증심사 및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절차를 정비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조사·확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ㅇ 규제대안 1은 조사·확인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조사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KS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ㅇ 반면 규제대안 2는 기존 심사·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조사·확인조사의 체계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및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규제대안 1을 선택함

3. 규제목표

- ㅇ 인증심사 및 조사·확인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조사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KS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실효성 및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개정안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조사 및 확인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기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사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

○ 조사 대상과 장소,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 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기존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새로운 의무 부과를 최소화하였으므로 규제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본 개정안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조사 및 확인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별도의 의무를 신설하거나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조사 대상 기업별 규모와 조사 발생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부족하여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KS 인증기업 및 KS 인증표시 등의 부정사용 혐의가 있는 사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본 개정안은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정비하고, 추가 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KS 인증은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취득하는 임의인증으로, 인증기업은 인증제품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KS 인증표시 등의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는 공정한 인증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조사절차를 차등 적용할 경우 조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규제 차등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불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에서는 어린이제품 사고조사 시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과 조사원의 증표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인증심사 및 조사·확인조사의 절차·방법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인증심사 및 조사·확인조사의 절차·방법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개정안은 기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절차를 정비하고,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조사 및 확인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피규제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음
- 또한 기존 조사절차를 준용하고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의 이해와 대응이 용이하므로 규제 준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본 개정안은 기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절차를 정비하고, 새롭게 도입된 조사 및 확인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사체계와 인력을 활용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또한 기존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이나 추가 인력 확보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의 조사체계와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조사 및 확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편성이나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박용갑 의원, ’25. 2. / 박성훈 의원, ’25. 6. / 송재봉 의원, ’26. 1. / 이재관 의원, ’26. 1. / 오세희 의원, ’26. 1. / 정진욱 의원, ’26. 2.)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6. 5.)

○ 산업표준화법 개정·공포 (공포 ’26. 9., 시행 ’27. 3.)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26. 11.)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 예고(부처협의): ’26. 10~12월

○ 규제 심사: ’26. 12~’27. 1월

○ 법제처 심사: ’27. 1~2월

○ 공포: ’27. 3월

3. 규제 정비계획

산업표준화법 제17조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인증심사유형 다양화	26.12

4.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절차를 정비하고, 새롭게 도입된 조사 및 확인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조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결과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기존 조사절차를 준용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 행정체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 이를 통해 부적합 인증제품 및 KS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인증심사 및 조사·확인조사의 절차·방법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인증심사 및 조사·확인조사의 절차·방법 구체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KS 인증기업 및 조사·확인조사 대상 사업자
활동제목	조사·확인조사에 따른 자료 확인 및 현장 대응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규제비용 식별** 본 규제는 인증심사 및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절차를 정비하고, 「산업표준화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확인 및 현장 대응에 따른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자료 확인) 조사·확인조사 과정에서 제조·판매·유통에 관한 서류 및 기록, 제품 표시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담당자 대응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현장 대응) 사업장·사무소 및 위탁 제조공장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설비와 기록의 확인, 조사자 안내 및 사실관계 소명 등에 따른 업무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료 채취)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봉인하거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협조 및 관련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ㅇ 규제비용 산출** 기존 인증심사 및 조사체계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조사 유형별 대상 사업자 수와 조사 빈도 및 추가 대응시간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량적인 비용 산정에 한계가 있음 - 특히 확인조사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비정기적 조사로서 대상과 발생 건수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조사 내용에 따라 자료 준비 및 현장 대응시간도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성적으로 분석함

②정부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소관 행정기관
활동제목	조사 · 확인조사의 실시 및 결과 관리
비용항목	행정업무 수행비용 및 조사 관련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비용 식별** 본 규제에 따라 조사·확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결과보고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관련 자료 확인 및 조사 결과 관리 등에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조사 수행) 조사대상 선정, 현장 방문, 표시사항 및 관련 서류·기록 확인 등에 담당 공무원과 인증심사원의 업무시간 및 출장비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시료 및 시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봉인 및 품질시험 의뢰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결과 관리)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검토, 위반사실 확인 및 후속 조치 등에 행정업무가 수반될 수 있음 **o 비용 산출** 조사·확인조사는 기존 KS 인증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개정에 따라 추가로 실시되는 조사 건수와 업무시간 및 시험비용 등을 구분하기 어려워 정량적인 비용 산정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조사대상과 조사내용 및 위반 혐의 발생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업무와 비교하여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함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KS 인증제품 · 서비스 소비자
활동제목	조사 · 확인조사 체계 개선에 따른 소비자 보호
편익항목	부적합 제품 유통 방지 및 인증 신뢰성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규제편익 식별) 조사·확인조사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KS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해지고, 부적합 제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보호) 제품 표시사항 및 제조·판매·유통 관련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 (인증 신뢰성 향상)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KS 인증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ㅇ (규제편익 산출) 조사·확인조사 절차의 구체화에 따른 위반행위 적발 및 부적합 제품 유통 감소 효과와 소비자 피해 예방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이행계획서 항목 추가</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9조</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10.29~2026.12.28</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수거등 명령의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업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서식과 작성 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거등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여 제출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거등 명령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ㅇ(시행규칙 제17조의2)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수거등 결과보고서 및 보완명령 이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을 규정
ㅇ(별지 제14호의3서식) 수거등 대상 제품, 수거등의 방법 및 기간, 소비자 안내방법 등 이행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수거등 명령의 이행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수거등 명령을 받은 KS 인증기업</td><td>연간 약 10개 기업
(최근 3년간 KS 인증취소 31건을 참고한 추정치)</td></tr><tr><td>이해관계자</td><td>해당 인증제품의 소비자 및 유통업체</td><td></td></tr></table></td></tr>
<tr><td>9.규제목표</td><td colspan="3">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과 작성 항목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서류 작성 · 제출 편의를 높이고, 제출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수거등 명령의 이행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함</td></tr>
<tr><td rowspan="3">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2">10.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r>
<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음</td></tr>
<tr><td>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td><td colspan="3"></td></tr>
<tr><td>기타</td><td>12.규제일몰제</td><td colspan="3"><table><tr><th>대분류</th><th colspan="2">소분류</th></tr><tr><td rowspan="2">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tr><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8"></td><td rowspan="8"></td><td></td><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td>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td>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3"><table>
<tr><th>일몰설정여부</th><th>일몰조문</th><th>연장여부</th></tr>
<tr><td></td><td></td><td></td></tr>
<tr><th>일몰유형</th><th>일몰설정기간</th><th>일몰주기</th></tr>
<tr><td></td><td></td><td></td></tr>
</table></td></tr>
<tr><td>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3"></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2(이행계획서 작성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 이행계획서는 별지 제14의2호 서식에 따른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삭 제>
2. 해당 제품명 및 상표	
3.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4. 제품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 제품 결함의 시정내용 및 시정 기간	②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거등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의3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③ 영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의4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14의3] <신 설>	[별지14의3] **수거등 결과보고서**

사업자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수거등 대상 제품정보	제품명	상표
	표준번호	표준명

현 행	개 정 안
	인증번호 / 종류, 등급, 호칭, 모델 제조기간 / 제조수량 판매기간 / 판매수량 명령 날짜/내용 수거 등 계획 내용 수거등의 내용 및 실적 수거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 대책 「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수거등 명령의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등의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서식과 작성 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수거등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여 기업의 서류 작성·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제출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수거등 명령의 이행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내용)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수거등 결과보고서 및 보완명령 이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대상 제품, 수거등의 방법 및 기간 등 작성 항목을 구체화함

○ (선택근거) 제출서식과 작성 항목을 표준화하여 기업의 서류 작성·제출 편의를 높이고, 수거등 명령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규제대안으로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KS인증기관 KS인증기업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청취 예정		

3. 규제목표

○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과 작성 항목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서류 작성·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제출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수거등 명령의 이행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개정안은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과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여 제출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거등 명령의 이행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

○ 기존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식을 마련한 것으로, 별도의 새로운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작성 항목을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였으므로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음

- 중기영향평가

본 개정안은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과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의 새로운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미치는 추가적인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전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수거등 명령 대상 기업의 규모별 서류 작성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부족하여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수거등 명령을 받은 KS 인증기업
⑤ 예비분석내용		본 개정안은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과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기존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새로운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작성 항목도 수거등 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기업 규모에 따라 작성 항목을 달리 적용할 경우 수거등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불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제품 수거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등 대상 제품의 정보, 조치방법과 기간, 소비자 안내 방법 등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도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서 수거등의 이행관리를 위한 보고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유사사례가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개정안은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과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존 제출의무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제한적이며, 또한 제출서식과 작성 항목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이 용이해지므로 규제 준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본 개정안은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과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거명령 관련 행정체계를 활용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제출서식의 표준화를 통해 관련 자료의 접수·검토 및 이행 여부 확인이 용이해지므로,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이나 추가 인력 확보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본 개정안은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거명령 관련 행정체계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예산편성이나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과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여 제출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거등 명령의 이행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임

○ 기존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새로운 의무 부과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제한적이며, 기존 행정체계와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이 가능하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 이를 통해 기업의 서류 작성·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수거등 명령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적합 인증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 · 기준</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7의2, 별표8</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제17조</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10.29~2026.12.28</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최근 산업환경 및 제품의 개발 · 공급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심사 중심의 KS 인증체계로는 제조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거나 제품의 설계 · 개발과 제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인증심사유형을 디(D)형 · 이(E)형 · 지(G)형으로 다양화하고, 유형별 심사방법과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업의 생산 · 품질관리 방식에 적합한 인증심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증심사유형별 심사항목과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증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KS 인증제도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함</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ㅇ (제13조 및 별표 7의2) 인증심사유형을 디(D)형 · 이(E)형 · 지(G)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인증심사 · 정기심사 · 이전심사의 방법을 규정
ㅇ (별표 7의2) 디(D)형은 공장심사, 이(E)형과 지(G)형은 품질관리심사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지(G)형은 인증기간을 4년으로 정하는 등 유형별 심사방법을 구체화
ㅇ (별표 8) 인증심사유형별로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 · 제조설비관리, 제품관리 등 심사항목과 적용기준을 구분하여 규정</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KS 인증 신청기업 및
인증기업</td><td>2025년 기준 KS 인증공장
8,728개</td></tr><tr><td>이해관계자</td><td>KS 인증기관
인증제품 · 서비스 소비자</td><td>KS인증기관 12개 및 소비자</td></tr></table></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제조 · 품질관리 방식에 적합한 인증심사체계를 마련하고, KS 인증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td></tr>
<tr><td rowspan="5">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5">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피규제자</td><td>30.98</td><td></td><td>30.98</td></tr>
<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
<tr><td>정성분석</td><td></td><td></td><td></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기타</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11.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 colspan="2">중기영향평가</td></tr>
<tr><td></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 colspan="2">해당없음</td></tr>
<tr><td>12.규제일몰제</td><td colspan="5"><table>
<tr><th>대분류</th><th colspan="2">소분류</th></tr>
<tr><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td>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td>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able>
<table>
<tr><th>일몰설정여부</th><th>일몰조문</th><th>연장여부</th></tr>
<tr><td></td><td></td><td></td></tr>
<tr><th>일몰유형</th><th>일몰설정기간</th><th>일몰주기</th></tr>
<tr><td></td><td></td><td></td></tr>
</table></td></tr>
<tr><td>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5">유연한 분류체계 적용</td></tr>
<tr><td>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td><td colspan="5"><table>
<tr><th>적용여부</th><th>비용</th><th>편익</th><th>연간균등순비용</th></tr>
<tr><td>적용</td><td>30.98</td><td></td><td>3.91</td></tr>
</table></td></tr>
<tr><td>15.규제정비 계획</td><td colspan="5">산업표준화법 제17조</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인증심사유형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유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 별표 5의 표준인증심사유형 체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디(D) 형 2. 이(E) 형 3. 지(G) 형
<신 설>	②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 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유형을 품목별 또는 분야별로 적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유형별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7의 2]	[별표7의 2]
<신 설>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제13조제2항 관련)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유형별로 실시하는 심사[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 및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심사를 말하며, 이하 각각 "공장심사",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라 한다]의 종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현 행

[별표8]

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

<신 설>

Ⅰ. 제품분야

1. 일반심사기준

가.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가)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 정 안

인증심사 유형	인증심사	정기심사	이전심사	만료일
디(D)형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공장심사	공장심사	—
이(E)형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
지(G)형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인증일로부터 4년

비고

1. 서비스에 대한 인증심사유형 적용시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심사는 위 표의 "품질관리심사"로 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비스심사는 "제품심사"로 본다.
2. 지(G)형의 인증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디(D)형 또는 이(E)형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별표8]

인증심사기준(제13조제4항 관련)

이 표에서 유형란의 "O"표시는 해당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인증심사유형을 나타낸다. 디(D)형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에서, 이(E)형 또는 지(G)형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심사에 대해 각각 심사한다.

Ⅰ. 제품분야

1. 일반심사기준

가.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D)	유형 이(E)	유형 지(G)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
	나)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	○	○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가)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나) 필요시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		

현 행

심사사항	심사기준
활동	

나. 자재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검사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품질기준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3) 검사방법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해야 한다.
4) 이행사항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품질검사(이하 이 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해야 한다.

<비고>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다. 공정·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심 사 기 준
1) 검사 또는 관리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공정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개 정 안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D)	유형 이(E)	유형 지(G)
활동				

나. 자재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D)	유형 이(E)	유형 지(G)
1) 검사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자재품질기준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3) 검사방법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해야 한다.	○		
4) 이행사항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품질검사(이하 이 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해야 한다.	○	○	○

<비고>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이(E)형과 지(G)형의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자재를 인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때에 해당업체 현장을 통해 심사항목 1)항, 4)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공정·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심 사 기 준	유형 디(D)	유형 이(E)	유형 지(G)
1) 검사 또는 관리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	○
2) 검사 또는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	○	○	○

현 행

관 리 방법	규정해야 한다.
3) 이행사항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중간 검사·관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조 작업표준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비고>

1.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라. 제품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제품 설계 및 개 발 절 차 · 계 획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 품 질 검 사 항목	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3) 검사 방법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4) 이행사항	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한다. 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신 설> 다) 제품시험 검사자가 한국산업표준(KS)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 정 안

공정관리 방법	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3) 이행사항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중간 검사·관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제조 작업표준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비고>

1.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E)형과 지(G)형의 경우 인증을 신청한자의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해당업체 현장을 통해 심사항목 1)항,2)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제품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D)	이(E)	지(G)
1)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 · 계획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	○
2) 제품 품질 검사 항목	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	○
3) 검사 방법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	○	○
4) 이행사항	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한다.	○	○	○
	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	○	○
	다) 제품의 품질 검사를 실시한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		
	<삭 제>			

<비고>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현 행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참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신설>
4. 공장심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계평가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주요 설비 명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시험·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이행 사항	가)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나)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비고>
1.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주요 시험·검사설비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개 정 안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참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장심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계평가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이(E)형과 지(G)형의 경우 인증을 신청한자의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 현장을 통해 심사항목 2)항, 3)항, 4항)의 나)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D)	유형 이(E)	유형 지(G)
1) 주요 설비 명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시험·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2) 이행 사항	가)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나)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	○

<비고>
1.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주요 시험·검사설비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3. 이(E)형과 지(G)형의 경우 인증을 신청한자의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해당업체 현장을 통해 심사항목 2)항의 다)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 행

1) 소비자보호	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2) 환경관리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원관리	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생산·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해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 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다)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4)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8)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9)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6)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한국산업표준(KS)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개 정 안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D)	유형 이(E)	유형 지(G)
1) 소비자보호	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	○
	나) <전단삭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	○	○
2) 환경관리	<삭 제>			
	가)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3) 자원관리	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생산·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해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	○	○	
	나)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 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		
	다)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4)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8)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9)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		

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유형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유형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6)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품목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 중에서 일부_이 필요한 사항
2) 품목별·유형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한국산업표준(KS)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현 행

5) 제품인증표시 방법
6)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Ⅱ. 서비스 분야

1. 사업장심사기준

가. 서비스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사내표준화·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 기업의 서비스 사내표준 및 관리 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2) 서비스 품질의 도입 및 확산	가) 서비스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 품질경영을 위한 제안활동 또는 그 밖에 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품질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나. 서비스 운영체계

심사사항	심사기준
서비스 운영체계	가) 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 및 서비스 업무 수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 경영책임자는 서비스 경영이념과 의지를 정립해야 하고, 서비스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 고객과 시장의 요구 파악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 고객접점(MOT), 고객정보시스템 및 고객의 소리(VOC)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춰 고객 요구사항을 서비스품질 경영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다. 서비스 운영

심사사항	심사기준
서비스 운영	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전 서비스, 서비스 수행 및 사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의

개 정 안

5) 제품인증표시 방법
6)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유형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Ⅱ. 서비스 분야

1. 사업장심사기준

가. 서비스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이(E)
1) 사내표준화·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나) 기업의 서비스 사내표준 및 관리 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
2) 서비스 품질의 도입 및 확산	가) 서비스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나) 품질경영을 위한 제안활동 또는 그 밖에 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품질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

나. 서비스 운영체계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이(E)
서비스 운영체계	가) 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 및 서비스 업무 수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나) 경영책임자는 서비스 경영이념과 의지를 정립해야 하고, 서비스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다) 고객과 시장의 요구 파악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 고객접점(MOT), 고객정보시스템 및 고객의 소리(VOC)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춰 고객 요구사항을 서비스품질 경영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

다. 서비스 운영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이(E)
서비스 운영	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전 서비스, 서비스 수행 및 사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	○

현 행	개 정 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타사(타인)가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다)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라.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가)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행 인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서비스 종사자에게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계획·실시해야 하고, 서비스품질경영부서 경영간부에 대해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서비스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서비스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라) 서비스 품질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 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서비스 품질수준의 평가 (4) 각 서비스 절차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서비스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 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고객(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관리 및 조치 (8)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

마.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가)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나) 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환경관리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 환경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오염물질

	적인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타사(타인)가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다)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라)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

라.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이(E)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가)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행 인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나) 서비스 종사자에게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계획·실시해야 하고, 서비스품질경영부서 경영간부에 대해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다) 서비스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서비스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
	라) 서비스 품질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 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서비스 품질수준의 평가 (4) 각 서비스 절차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서비스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 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고객(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관리 및 조치 (8)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	○

마.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이(E)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가)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나) 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환경관리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다) 환경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토양, 진동, 소음,	○

현 행	개 정 안
(대기, 수질, 토양, 진동, 소음, 폐기물 등),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 경영을 실시해야 한다.	폐기물 등),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 경영을 실시해야 한다.

2. 서비스심사기준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1) 고객이 제공받은 사전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사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해야 한다.
2)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해야 한다.
3) 고객이 제공받은 사후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사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사업장심사기준 및 제2호의 서비스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분야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사업장심사기준 및 제2호의 서비스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분야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3) 인증표시의 방법

4) 서비스의 인증 구분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서비스심사기준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유형 이(E)
1) 고객이 제공받은 사전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사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해야 한다.	○
2)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해야 한다.	○
3) 고객이 제공받은 사후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사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

3.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유형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사업장심사기준 및 제2호의 서비스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분야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사업장심사기준 및 제2호의 서비스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분야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3) 인증표시의 방법

4) 서비스의 인증 구분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제조공장 중심의 KS 인증심사체계를 개선하고, 제품의 생산·공급 방식 등 기업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제조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심사 중심의 새로운 인증심사유형(E형·G형)을 도입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업의 인증 접근성을 높이고, 제품의 품질 및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 도입
	내용	기존 디(D)형 외에 이(E)형·지(G)형을 신설하고, 인증심사유형별 인증심사·정기심사·이전심사의 방법 및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적용
규제대안2	대안명	기존 제조공장 중심의 인증심사체계 유지
	내용	기존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중심의 인증심사체계를 유지하고, 별도의 이(E)형·지(G)형 심사유형 및 품질관리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제조공장 보유 여부 등 기업의 생산·운영 형태에 맞는 인증심사유형을 적용하여 KS 인증 접근성을 높이고, 유형	신설 이(E)형·지(G)형 적용에 따른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별 심사기준을 통해 제품의 품질관리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음	
규제대안2	기존 인증심사체계를 유지하므로 별도의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제조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KS 인증 취득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생산·공급 형태를 반영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로봇분야 KS인증 품목 관련 기업관계자	기업간담회 실시 (2025.9.16., 서울역 인근, 간담회)	공장심사 대비 심사 완화 요구	품질관리심사에서 품질관리담당자 면제 등 별표9 심사 대폭 완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ㅇ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제조공장 중심의 인증심사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다양한 생산·운영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 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ㅇ 규제대안 1은 제조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품질관리체계를 통해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제도의 유연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ㅇ 반면 규제대안 2는 기존 인증심사체계를 유지하여 기업의 다양한 생산 방식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증기업의 선택권 확대와 제품 품질 및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규제대안 1을 선택함

3. 규제목표

- ㅇ 기존 제조공장 중심의 KS 인증심사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다양한 생산·운영 형태에 적합한 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KS 인증의 접근성과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 ㅇ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품질관리체계에 적합한 심사를 실시하고, 제품의 품질 확보 및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개정안은 기존 제조공장 중심의 인증심사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다양한 생산·운영 형태에 적합한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KS 인증의 접근성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

○ 기존 디(D)형 외에 이(E)형·지(G)형을 도입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심사방법 및 심사항목을 차등 적용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품의 품질관리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신설 심사유형은 품목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본 개정안은 기존 D형 외에 E형·G형을 도입하여 제조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심사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증 접근성을 높이고 심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신설 E형·G형의 적용 대상 및 인증 신청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정성적으로 분석
④ 대상 업종		KS 인증 대상 제품 제조업 및 관련 품질관리 기업
⑤ 예비분석내용		◦ 기존 D형 외에 E형·G형을 도입하여 제조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심사유형별 특성에 따라 심사방법 및 기준을 차등 적용함 ◦ 인증심사유형은 기업 규모가 아닌 생산·운영 형태와 품질관리 체계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 및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에 따른 추가적인 차등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⑥ 차등화적용 여부		기업의 생산·운영 형태에 따라 인증심사유형별 심사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업 규모에 따른 별도의 규제 차등화는 불필요함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음

- 일몰설정 여부

본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운영 형태에 적합한 KS 인증심사유형별 심사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증제품의 품질 확보와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일몰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적용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	공장 중심의 경직된 인증체계를 생산·운영 방식에 맞춘 다변화 체계로 유연화 - 종전 체계(경직성): 기존 KS 인증은 전통적 '제조공장 보유자'만을 전제로 공장심사를 필수화하여, 제조공장이 없는 기업의 제도 진입을 원천 차단함 - 개선 내용(유연화): 개정안(제13조, 별표 7의2)은 인증 대상을 단일 제조공장 기준에 묶어두지 않고 기업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포섭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유형을 디(D)형·이(E)형·지(G)형으로 다변화·유연화함 - 특히 제조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설계·개발·외주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공장심사 대신 '품질관리심사' 중심의 심사방법(E형·G형)을 허용함으로써 신산업·다변화된 생산모델 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함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	사전 진입요건 완화에 따른 사후 제품 품질 및 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 제조공장 직접 보유라는 사전 시설·물적 요건을 완화하여 진입을 폭넓게 허용하는 대신,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성능·안전성 시험)'를 병행(별표 7의2 E형) 시장 유통 제품의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사후적으로 담보함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 및 별표 5에서는 적합성평가의 특성에 따라 표준인증심사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 도입>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0.98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0.98		30.9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0.98		30.98
기업순비용		30.98	연간균등순비용	3.91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개정안은 기존 디(D)형 외에 이(E)형·지(G)형을 도입하여 기업의 생산·운영 형태에 적합한 인증심사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인증신청기업이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으므로 규제 준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KS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활용하고, 신설 이(E)형·지(G)형의 심사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KS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신설 이(E)형·지(G)형 심사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조직 구축이나 추가적인 정부 예산 확보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박용갑 의원, ’25. 2. / 박성훈 의원, ’25. 6. / 송재봉 의원, ’26. 1. / 이재관 의원, ’26. 1. / 오세희 의원, ’26. 1. / 정진욱 의원, ’26. 2.)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6. 5.)

○ 산업표준화법 개정·공포 (공포 ’26. 9., 시행 ’27. 3.)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26. 11.)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 예고(부처협의): ’26. 10~12월

○ 규제 심사: ’26. 12~’27. 1월

○ 법제처 심사: ’27. 1~2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27. 2월

3. 규제 정비계획

산업표준화법 제17조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인증심사유형 다양화	2026.12

4.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제조공장 중심의 인증심사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다양한 생산·운영 형태를 반영한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KS 인증의 접근성과 기업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제임

○ 기존 디(D)형 외에 이(E)형·지(G)형을 도입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심사 방법 및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품의 품질관리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비례원칙에 부합

○ 또한 기존 KS 인증기관의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업의 KS 인증 참여 확대와 인증제품의 품질 및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0.98		30.9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0.98		30.98
기업순비용		30.98	연간균등순비용	3.91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 및 기준 도입>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이(E)형 KS 인증기업		
활동제목	이(E)형 정기심사에 따른 제품심사		
비용항목	기타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21,000,000	16,851,472
	2032	0	0
	2033	0	0
	2034	0	0
	2035	21,000,000	14,130,993
	2036	0	0
	합계	42,000,000	30,982,46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	산식설명	산식
	2027	정기심사 없음	0
	2028	정기심사 없음	0
	2029	정기심사 없음	0
	2030	정기심사 없음	0
	2031	피규제 기업 수 * 제품시험비용 * 정기심사 주기	7*3000000
	2032	정기심사 없음	0
	2033	정기심사 없음	0
	2034	정기심사 없음	0
	2035	피규제 기업 수 * 제품시험비용 * 정기심사 주기	7*3000000
	2036	정기심사 없음	0
근거설명	**ㅇ 규제비용 식별** - (추가 제품시험비용) 기존 디(D)형은 최초 인증심사 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정기심사 시 공장심사를 실시하는		

반면, 신설 이(E)형은 정기심사 시 품질관리심사와 제품심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품시험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 (비용 산정 범위) 최초 인증심사 시 실시하는 제품심사는 기존 디(D)형에서도 실시하는 사항이므로 추가 규제비용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E)형의 정기심사 시 추가되는 제품시험비용만 산정함

ㅇ 규제비용 산출

- (피규제 기업 수) 신설 이(E)형 적용이 예정된 착용로봇 분야의 KS 인증수요 5개 업체를 기준으로 하되, 향후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신규 인증수요를 추가로 고려함
 → 최근 3년간(2022~2025년) KS 인증공장 수는 8,442개에서 8,728개로 286개 증가하였으며, 2026년 전체 KS 인증대상 품목 827개 중 로봇 관련 품목 7개가 차지하는 비율(0.85%)을 적용하면 약 2.4개 업체의 추가 수요가 추정됨
 → 이에 착용로봇 분야의 인증수요 5개 업체와 추가 추정수요 2개 업체를 합산하여 총 7개 업체를 비용분석 대상으로 설정
- (제품시험비용) 착용로봇의 제품시험 수수료는 확인된 금액인 업체당 300만원을 적용함
- (정기심사 주기) 이(E)형은 4년 주기 정기심사 시 품질관리심사와 제품심사를 실시하므로, 2027년 최초 인증 취득을 기준으로 2031년 및 2035년에 각각 제품시험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함
- (규제비용 산출) 정기심사 1회당 7개 업체에 각각 300만원의 제품시험비용이 발생하여 총 2,100만원이 소요되며, 10년간 2회의 정기심사에 따른 명목 총비용은 4,200만원으로 산정함
- (현재가치 환산) 기존 분석과 동일한 할인 방식 및 할인율 4.5%를 적용한 10년간 규제비용 현재가치는 약 32.38백만원으로 산정됨

ㅇ 민감도 분석

- 착용로봇 분야의 인증수요는 5개 업체를 기본으로 향후 이(E)형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추가 인증수요를 고려 7개 업체를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 실시

구분	인증기업 수	제품시험 수수료	10년 명목 총비용	10년 현재가치

	낮음	5개사	300만원	30.00백만원	23.13백만원
	기준	6개사	300만원	36.00백만원	27.75백만원
	높음	7개사	300만원	42.00백만원	32.38백만원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KS 인증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 ·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활동제목	KS 인증제품 ·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소비자 보호 및 KS 인증 신뢰성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제조·품질관리 방식에 적합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이(E)형·지(G)형은 품질관리심사와 제품심사를 함께 실시하여 제조·품질관리체계 및 제품의 KS 적합성을 확인함으로써 인증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 - 다양한 기업의 KS 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인증심사원 취소기준</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제18조</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10.29~2026.12.28</td></tr>
<tr><td rowspan="3">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비하고,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심사원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증심사원의 책임성 강화 및 KS 인증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ㅇ(별표 11 제4호 신설)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 조사·현장조사, 추가 조사 및 확인조사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 기준을 신설</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KS인증심사원</td><td>약 2,500명</td></tr><tr><td>이해관계자</td><td>기존 KS 인증기관
KS 인증기업</td><td>12개 기관
8,728개 공장 (2025년 기준)</td></tr></table></td></tr>
<tr><td rowspan="3">규제의
적정성</td><td>9.규제목표</td><td colspan="3">새롭게 도입된 조사 및 확인조사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증심사원의 책임성 강화 및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td></tr>
<tr><td rowspan="2">10.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r>
<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
<tr><td>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td><td colspan="3"></td></tr>
<tr><td>기타</td><td>12.규제일몰제</td><td colspan="3"><table><tr><th>대분류</th><th colspan="2">소분류</th></tr><tr><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tr><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tr><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td><td>미해당</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9"></td><td rowspan="9"></td><td></td><td colspan="2">성격의 규제</td><td></td></tr>
<tr><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td colspan="2">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td colspan="2">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일몰설정여부</td><td>일몰조문</td><td>연장여부</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일몰유형</td><td>일몰설정기간</td><td>일몰주기</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4"></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1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 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

위반행위	법적근거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1호	자격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다.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라.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3호	자격취소
<신 설>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4호	자격취소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나. 1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다. 인증심사원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5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개 정 안

[별표1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 정지의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법적근거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1호	자격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다.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라.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3호	자격취소
4.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조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법 제18조제3항3의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4호	자격취소
6.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나. 1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다. 인증심사원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5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업무범위에 시판품 조사·현장조사 외에 추가 조사 및 확인조사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조사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시행규칙은 인증심사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한 경우의 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추가된 조사업무에 대한 처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부정한 조사업무 수행 및 향응 수수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증심사원의 책임성과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내용)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른 조사 및 확인조사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심사원에 대해 위반행위별 자격 취소·정지 기준을 마련함

○ (선택근거) 새롭게 추가된 조사업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여 조사업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대안으로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KS인증심사원 및 KS인증기관	26.11.20., 한국표준협회, 간담회 예정	-	-

3. 규제목표

○ 조사 및 확인조사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조사업무의 공정성과 인증심사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개정안은 조사 및 확인조사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

○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조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므로, 규제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본 개정안은 인증심사원이 조사 및 확인조사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이 아닌 인증심사원 개인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부담은 발생하지 않아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3에서도 인증심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 취소·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인증심사원이 조사 및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시설·인력 확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준수할 수 있음
- 인증심사원은 기존에도 공정하고 적법하게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개정은 새롭게 추가된 조사업무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본 개정안은 기존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 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조사업무 관련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행정처분 체계를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행정조직이나 추가 인력 확보 없이 기존 업무체계 내에서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본 개정안은 기존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 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조사업무 관련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자격관리 및 행정처분 체계를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장비 구축이나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조사 및 확인조사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업무의 공정성과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임

○ 기존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 및 행정처분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이 크지 않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분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과 집행가능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전담기관의 지정기준</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별표7의2, 별표8</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제22조의 2</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10.27~2026.12.28</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KS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 및 재정적·행정적 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담기관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KS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ㅇ(제17조의3제1항)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인증기관·인증심사원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능력 등으로 구체화
ㅇ(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담기관 지정계획의 사전 공고, 지정신청 서류의 제출, 지정요건 확인 및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
ㅇ(제17조의3제5항 및 제6항) 인증제도 운영 관련 민원·상담 및 조사·연구 지원 등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전담기관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공고사항을 구체화</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담기관 지정
신청기관·단체</td><td>1개 기관</td></tr><tr><td>이해관계자</td><td>KS 인증기관,
KS인증심사원, KS인증기업</td><td>KS인증기관 12개, 인증심사원
약2,500명(2025년 기준),
KS인증공장 8,728개</td></tr></table></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KS 인증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담기관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해 KS 인증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td></tr>
<tr><td rowspan="5">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5">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피규제자</td><td></td><td></td><td></td></tr>
<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
<tr><td>정성분석</td><td></td><td></td><td></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able>

<table>
<tr><td rowspan="11">기타</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11.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 colspan="2">중기영향평가</td></tr>
<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 colspan="2">해당없음</td></tr>
<tr><td rowspan="10">12.규제일몰제</td><td>대분류</td><td colspan="3">소분류</td></tr>
<tr><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td colspan="2">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td colspan="2">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td colspan="2">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4">
<table>
<tr><td>일몰설정여부</td><td>일몰조문</td><td>연장여부</td></tr>
<tr><td></td><td></td><td></td></tr>
<tr><td>일몰유형</td><td>일몰설정기간</td><td>일몰주기</td></tr>
<tr><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td><td>적용여부</td><td>비용</td><td>편익</td><td>연간균등순비용</td></tr>
<tr><td>적용</td><td></td><td></td><td></td></tr>
<tr><td>15.규제정비 계획</td><td colspan="4">해당없음 해당없음</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계획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2. 조직·인력 현황 및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현 행	개 정 안
	한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및 상담 지원 2. 인증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수행업무 4.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KS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 시판품조사 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 및 재정적·행정적 능력 등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담기관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KS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내용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재정적·행정적 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지정계획 공고, 신청서류 제출 및 지정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구체화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직접 관리체계 유지
	내용	별도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국가기술표준원이 현행과 같이 인증기관 관리, 인증심사원 관리 등 KS 인증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 유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전담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확보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관리와 시판품조사 등 KS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 필요

규제대안2	전담기관 신설에 따른 추가 운영예산이 발생하지 않음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관리 등 관련 업무의 확대에 따라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담기관 지정 신청 대상 기관·단체, KS 인증기관(12개), KS 인증심사원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청취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KS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관리, 시판품조사 등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규제대안 1을 선택함

○ 전담기관 운영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을 통해 KS 인증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존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KS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규제목표

○ KS 인증관리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관리, 시판품조사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KS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KS 인증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재정적·행정적 능력 등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기존 조직과 인력의 활용을 제한하지 않아 규제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규제는 국가 적합성평가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KS 인증기관 및 인증기업에 새로운 규제 준수 의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은 아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본 규제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접적인 규제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항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본 규제는 KS 인증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전담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KS 인증관리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일몰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본 규제는 KS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신기술·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우선 허용하거나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으로 기관·단체의 자격 및 전담조직·인력 확보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제출과 지정·취소 시 공고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대상 기관·단체의 범위와 수행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KS 인증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재정적·행정적 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는 충분히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지정요건 충족에 따른 과도한 규제부담이나 규제 준수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절차는 기존 행정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전담기관 지정절차는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정부 예산편성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재정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박용갑 의원, ’25. 2. / 박성훈 의원, ’25. 6. / 송재봉 의원, ’26. 1. / 이재관 의원, ’26. 1. / 오세희 의원, ’26. 1. / 정진욱 의원, ’26. 2.)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6. 5.)

○ 산업표준화법 개정·공포 (공포 ’26. 9., 시행 ’27. 3.)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26. 11.)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 예고(부처협의): ’26. 10~12월

○ 규제 심사: ’26. 12~’27. 1월

○ 법제처 심사: ’27. 1~2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27. 2월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음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KS 인증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 적합성평가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재정적·행정적 능력 등 최소한의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KS 인증기관 및 인증기업에

새로운 규제 준수 의무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부과하지 않음

○ 또한 기존 행정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전문적인 업무 지원을 통해 인증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규제 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전담기관 지정 신청기관 · 단체
활동제목	전담기관 지정요건 충족 및 지정신청
비용항목	지정요건 충족 및 신청 준비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규제비용 식별) 본 규제는 KS 인증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단체에 한하여 지정요건 충족 및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정요건 충족) 전담기관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재정적·행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조직 구성이나 인력 확보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정신청) 지정 신청기관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조직·인력 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본 규제는 전담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에 적용되며, 기존 KS 인증기관 및 인증기업에는 새로운 규제 준수 의무나 추가적인 직접비용을 부과하지 않음 ㅇ (규제비용 산출) 전담기관 지정 여부와 신청기관의 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정 대상 기관의 기존 조직·인력 및 업무 수행능력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추가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지정기준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재정적·행정적 능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력 수나 시설·장비 등의 확보 규모를 정하고 있지 않아 비용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움 - 또한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별도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신청기관의 여건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지므로 정성적으로 분석함

②정부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KS 인증관리 전담기관 운영 지원
비용항목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비용 식별) 본 규제는 KS 인증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 신청서류 검토, 지정요건 확인 및 결과 통보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정 관련 행정비용)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고, 신청서류 검토 및 지정요건 확인 등의 업무는 기존 행정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추가 인력 확보에 따른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운영 관련 재정소요) 전담기관 지정 이후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관리, 시판품조사, 불법제품 리콜 및 기업상담 지원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담기관 지정절차에 따른 행정비용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ㅇ (비용 산출)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행정업무는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해당 업무에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과 업무시간 등을 구분하기 어려워 정량적인 비용 산정에 한계가 있음 - 전담기관 운영을 위해 신규 예산편성을 검토 중이나, 이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잠정 재정소요로서 최종 지정 여부와 운영계획 및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음 - 또한 기존 행정조직에서 수행하던 업무의 비용과 전담기관 지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본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성적으로 분석함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KS 인증제품 · 서비스 소비자
활동제목	KS 인증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
편익항목	소비자 보호 및 인증제도 신뢰성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규제편익 식별) 현행 KS 인증관리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전담기관 지정 이후에는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관리, 시판품조사, 불법제품 리콜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보호 강화) 시판품조사 및 불법제품 리콜 관련 업무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부적합 제품 구매 및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인증 신뢰성 향상)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KS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보 접근성 개선) 인증제도 관련 민원 및 상담 지원업무를 통해 소비자가 KS 인증제도와 인증제품에 관한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규제편익 산출) 전담기관 운영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인증제도 신뢰성 향상 등의 편익이 예상되나, 전담기관 지정 이전과 이후의 부적합 제품 유통 감소 정도, 소비자 피해 예방 규모 및 인증 신뢰도 개선 효과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없어 정량적인 산정이 곤란함 - 또한 해당 편익은 기존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관리 업무를 전담기관이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 효과로,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개선 효과만을 구분하여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우므로 정성적으로 분석함